

미국시민 등록자를 위한 COVID-19에 대한 정보

2020년 3월 29일

뉴욕주 미국시민 등록국(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, ONA)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(COVID-19)의 확산 기간 동안 이민자와 난민에게 정보를 드리는 이 개요를 마련하였습니다.

배경:

2019년 12월, 신형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(COVID-19)가 발견되었습니다. COVID-19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대규모 바이러스군의 일부인 바이러스(SARS-CoV-2)에 의해 발생합니다.

귀하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:

- 이민 신분 또는 건강 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COVID-19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찾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 종사자들은 귀하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. 그러나,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을 경우 귀하는 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에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의료 종사자는 해당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.
- 예방 진료, 검사 또는 치료 등 COVID-19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찾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Medicaid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"공적부조" 검사에서 이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.
- 누구든 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의료진에게 직접 언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통역 서비스는 직접 또는 전화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몸이 아프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미리 전화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, 커뮤니티 의료 센터 또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. 원격 의료 서비스는 귀하와 주변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Cuomo 주지사는 보험사에 원격 의료 방문에 대한 분담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COVID-19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?

예.

COVID-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 기간 동안 본인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되시면, 이민 신분 또는 건강 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의료 서비스는 "공적부조"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)는 예방 진료, 검사 및 치료 등 COVID-19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가 "공적부조" 검사에서 귀하에게 불리하지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- COVID-19 검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모든 뉴욕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NYS COVID-19 핫라인 1-888-364-3065번으로 문의하십시오. 지원 서비스는 100여 개의 언어로 제공됩니다.

귀하의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십시오:

- 본인과 가족이 COVID-19 관련 영향으로부터 대비하게 하려면 학교, 직장 및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몸이 아프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십시오. 노인이나 만성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지닌 가족을 돌볼 방법을 계획하십시오.
- COVID-19 발생 기간 동안 주요 공공 시설에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.
- Cuomo 주지사는 공유 일터 프로그램 근로자들이 COVID-19로 인해 실직한 경우 실업 보험료를 청구하는 데 7일의 보험금 지급 대기 기간을 면제해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.
- Cuomo 주지사는 COVID-19로 인해 의무적 또는 예방적 검역이나 격리 상태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보호 및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법률에도 서명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: <https://paidfamilyleave.ny.gov/COVID19>.

권리 알기(Know Your Rights):

- 뉴욕주 인권법(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, HRL)은 인종, 출신 국가 및 장애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. HRL은 이러한 특성에 따라 COVID-19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을 상대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.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법적 질문이 있으면 뉴욕주 인권부(NYS Division of Human Rights) 웹사이트(www.dhr.ny.gov)를 방문하거나 1-888-392-3644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- COVID-19에 대응하여, 연방 정부는 병원, 클리닉, 응급 치료 및 진료소를 포함한 의료 시설 또는 인근의 출입국 관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[지시](#)를 내렸습니다.
- 소셜 시큐리티 지불 및 COVID-19와 관련된 사기에 주의하십시오.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: www.socialsecurity.gov/coronavirus/
- 가정용 청소용품 및 손 소독제 등 제품의 불공정한 가격 인상을 신고하려면 뉴욕주 소비자 지원 핫라인(NYS Consumer Assistance Hotline, 1-800-697-1220)으로 전화하거나 소비자 불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. www.dos.ny.gov/consumerprotection/form/ComplaintForm1.asp
- 이민자와 난민은 ONA의 주 전역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도 무료 법률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하려면 다국어 지원 기밀 NYS New Americans 핫라인(1-800-566-7636)으로 전화하십시오.

자세한 정보

뉴욕주 보건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) COVID-19 웹 페이지:
<https://coronavirus.health.ny.gov/home>

질병통제예방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ng) 웹 페이지:
<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>